##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37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 장경태·조 국·황정아

박지원 · 민병덕 · 황명선

박 정ㆍ김승원ㆍ부승찬

김용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처장을 임명함에 있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고 있으며, 차장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함. 나아가 수사처검사의 경우에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함.

공수처의 처장은 차관급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인사인 검찰 총장과 동일한 수준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며, 같은 차관급 인사인 고등 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10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마찬가지로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 역시 타 수사기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높은 진입장벽이 세워짐에따라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공수처 1기

는 6개월간 차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며, 수사 실무진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 지하고자 함(안 제5조 등). 법률 제 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0년"을 "7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7년"을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① 처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① -		
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u>15년</u>	<u>10년</u>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			
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			
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차장) ① 차장은 <u>10년</u> 이상	제7조(차장) ① <u>7년</u>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			
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			
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	제8조(수사처검사) ①		
는 <u>7년</u>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u>3년</u>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			
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			
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			
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